

## I .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

## I.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

- ◆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시범 사업 및 시책사업과 교육훈련 등의 추진요령이 수록된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을 시달하여 사업추진 효과 제고
- ◆ 사군농촌진흥기관에서 도원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활동을 전개할 시군단위 실시계획 수립시 기본자료로 활용

### □ 법적근거

- 농촌진흥법(법률 제16472호, 2019. 8. 20일 일부개정) 제5조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, 교육훈련사업의 추진계획이 포함된 농촌 지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 농업과학 기술의 신속한 보급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활동을 전개할 지방단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보급

### 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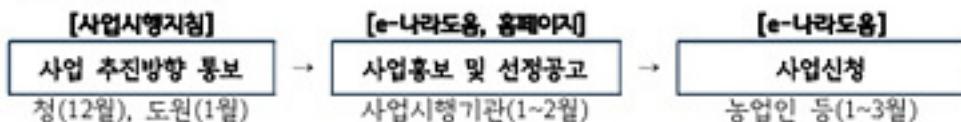
- 2020년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총괄
-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목표 및 시책방향
-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
-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등

### □ 시군단위 2020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수립 추진

- 시군에서는 중앙과 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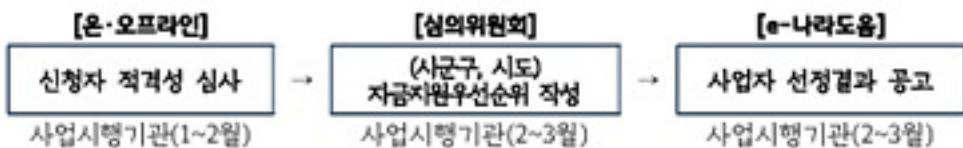
## 1. 2020년 사업시행 추진체계

### □ 사업신청단계



- 2020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시달 : 청(12월), 도원(1월)
- 도원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·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에게 통보
- 시·군농업기술센터 및 일반시·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,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
-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및 일반시·군에서는 수립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시·군보, e-나라도움,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홍보 및 공고(2020년 1월중)
  - 사업 수행부서에서는 적격 대상자가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온오프 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신청홍보
  - 주요 공고내용 : 사업목적,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접수장소, 선정절차 등
  - 안내서 비치 : 사업안내서는 해당 시·군농업기술센터 및 일반시·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 비치(필요시 읍면사무소 비치 가능)
-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(사업계획서 등록)
  - ※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(온라인 자격검증항목, 「기본규정」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,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)를 고지
  - ※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(\*.hwp, \*.pdf, 스캔파일 등)
  - ※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
- 사업신청자가 농업인,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
  - ※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'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'을 참조
- 사업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경우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(이하 「기본규정」) 제35조 제9항에 따른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적합 확인

## □ 사업자 선정단계



-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,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, 객관성,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
  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중복편중지원 방지, 유사자금 지원여부 등 검토 및 확인, 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부당 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
  -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2인 이상 현장조사 및 평가 실시
    - ※ 현장조사 사진첨부 등 공정성 확보
  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검증·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
    - ※ 신청자의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, 중복편중 지원여부,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기관,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 할 수 있음
  -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 교육장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중 해당 사업과 연관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우선 선정
    - ※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아닐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 대상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(단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목이 없는 경우 예외)
  -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심의
    - ※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
-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
-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e-나라도움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,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(ATIS)를 활용하여 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, 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 요청

### 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기준

- 관련규정 :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(대통령령 제25179호)
- 위원회 구성(시군 기준) : 20인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등)
  - 위원장 : 농업기술센터 소장
  - 위원 : 당해지역 대학교수, 시군 농업관련 담당공무원, 선도 농업인 등
- 주요기능 : 신기술보급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, 농업인력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등
  - ☞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시 행정지도·학계 등 폭넓은 대상자를 위촉  
(농업인학습단체, 퇴직농촌진흥공무원, 농촌진흥청 지역담당관 활용 등)
- \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29조 사업성검토 참조

### □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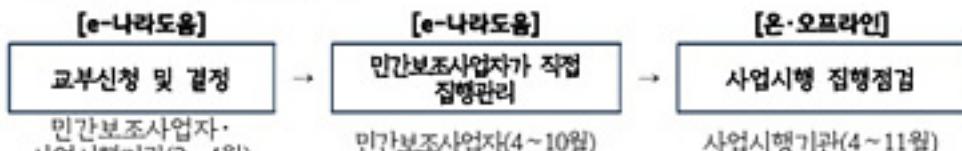
-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, 집행 절차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
  - ※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농가의 경우 탈락 사유에 대한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설명 추진
-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,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 ATIS시스템에 등록
-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 제출
- 보조금 교부 결정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
  - ※ 부기등기제도에 대한 사업대상자에게 교육·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
### 사업 계획 수립시 중점 사항

- 신기술보급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만 사업계획에 포함
  - \* 토지 매입비, 단순 농기계·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비 편성 금지
-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,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,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  - ※ 사업별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안에서 시행·추진하여, 별도로 사업계획 변경규정이 명시 된 사업은 별도규정을 따름

-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·시행
- 사업의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준하여 표찰(입간판)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
  - \* 표찰(입간판) 설치규격은 대상을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, 안전관리 또는 도난·훼손의 우려가 있는 약용작물 등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 가능

## □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



- (교부·집행) 증빙자료 제출(보조금 전용 계좌·카드 사용, 전자증빙자료 e 나라도움 등록 후 지출) → 민간보조금 예탁(한국재정정보원) → e나라도움을 이용 직접 집행(계약, 집행정보등록, 지출 등)관리
  - 전자세금계산서, 보조사업 전용 카드 등 국세청 등 중복지출 여부, 부적정사용 검증 후 집행
    - \* 신기술보급 사업 : 비예탁형 교부(농업인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, 보조사업자 계좌로 보조금 직접 교부)
- (모니터링) 온라인·오프라인 수시 점검(사업부서, 지자체)
  - 사업대상자 교육·기술지원,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수시 점검
  - 자금집행 적정, 위약,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 확인
- (실적보고)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(2개월 이내, 정산보고 포함)
-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보조금법')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
  - 농업특성상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(공동개발된 농자재, 농기계 포함)는 지방자치단체 "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(2019.5.28.))" 「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사유」로 적용하여 입찰시행 예외
    - \* 단,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,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탁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사전에 지자체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

## □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

[e-나라도움, 오프라인]

실적보고서 및  
정산보고서 제출

민간보조사업자

[e-나라도움, 공문 등]

제출서류 확인 및 정산보고

사업시행기관

[e-나라도움 등 온오프라인]

중요재산 관리

민간보조사업자  
(사후관리기간내)

-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에 대해 핵심기술과 경영기록장 작성요령 등을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
- 사업대상자는 농가경영기록장을 작성하고 사업완료시 해당 시군에 제시하며, 사업장 방문 농업인 등에 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3년간 보관
- 시군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
-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e-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

\* 사업 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

-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금받은 경우
- ② 보조금의 지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③ 보조금을 지금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-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,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, 위약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확인
-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기자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부가기자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
- \* 부가기자세 환급금 재사용시 목적의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내역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(당초 집행계획 항목에 포함된 자율은 자체 변경, 항목 외 자율은 농업기술원 검토승인 후 변경)
- 보조사업 대상자(1개 단체)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해야 함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\*를 확인한 경우 「보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, 반환 조치 후 10일 이내 농촌진흥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
- \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
- 사후 관리 :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(e나라도움)
  - (정보공시) 보조금 1천만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
    - \* 교부신청서, 보조사업 수입·지출내역, 정산보고서, 감사 자격사항, 재무재표 등
  - (중요재산) 부동산, 기계·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
    - \* 재산명, 목적·용도, 취득가액, 현재가액, 주소, 사진 등

\*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: 보조금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39조, 제40조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

- 부동산과 그 종물(10년) \* 유리온실 포함
- 그 밖의 기계, 장비 등 중요재산(5년) \* 비닐하우스 포함
  - ⇒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
    -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
    - ② 양도, 교환, 대여
    - ③ 담보의 제공
  - ⇒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「보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

-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(연 4회)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 실시
- 취득한 재산(부동산, 장비 등)는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목록 제출(반기별) 및 사후관리 실시

## □ 성과측정 단계

### <미래농업 사업확산 노력도>

- 2019년도 추진한 신기술보급사업 과제 중 해당 기술요인을 포함한 2020년도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사업 지원실적
  - 조사기관 :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(농업기술원 및 사군 협조)
  - 조사시기 : 1월 ~ 12월
  - 조사내용 : '20년도 세부 과제별 도 및 사군에서 지원한 기술지도 실적

### <수혜자 만족도 조사>

- 시범사업 추진실태, 기술지도 서비스,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
  - 조사시기 : 연중(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)
  - 조사기관 :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(도원 및 사군 협조)
  - 조사대상 :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
  - 조사방법 : 시·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(지) 조사

### <경제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분석>

- 신기술보급사업 세부과제 중 종료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확산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,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성과 측정
  - 조사시기 : 5~12월중
  - 조사대상 :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
  - 조사방법 : 외부 연구 용역
  - 주요내용 : 세부 과제별 기술 파급효과, 가치 평가 및 투자효과 등

### □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#### <사업평가>

##### 가. 원 칙

-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

##### 나. 사업평가 요령

- 평가주관기관 :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(도원 및 시군 협조)
- 평가기간 : 11~12월 중
- 평가대상 :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
- 평가기준 :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
  -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개최
  - 사업에 따라 인근농가와 대비하여 소득분석 실시
  - 인근농가의 기준 : 동일지역내 동일작목, 유사규모, 유사작기 농가 중 해당 시범요인을 수용하지 않은 3농가 내외의 평균 경영성과
    - \* 시범인근농가 조사는 대표성 등을 고려 조사규모를 지역설정에 맞게 추진 가능
  - 농가별 조사한 세부자료는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

#### <환류>

-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
- 세부과제 중 보완되어야 할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부서에 환류

## 2. 2020년 농업 여건과 전망

### □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객확대 및 기술보급체계 다양화 방안 모색

- 고령농, 귀농귀촌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구조 다변화

\*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율: ('10) 31.8% → ('17) 42.5, 귀농귀촌 가구수 ('13) 291천호 → ('17) 347

- 농업·농촌 활력화를 위한 청년, 귀농·귀촌 등 미래고객 확대

\* 40세미만 농가 경영주 : ('00) 92천명(6.7%) → ('10) 33(2.8%) → ('16) 9(0.9%)

### □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및 쌀 중심 직불체계의 공익형 개편에 따른 쌀 적정생산, 소비 다양화 및 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 필요

- 쌀 소비량 감소, 생산농가 소득감소 등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취약

- 1인당 쌀 소비량 : ('00) 93.6kg/년 → ('15) 62.9 → ('16) 61.9 → ('17) 61.8 → ('18) 61.0  
- 산자쌀가격 : ('13) 175천원/kg → ('14) 170 → ('15) 147 → ('16) 129 → ('17) 171 → ('18) 193 → ('19) 190

-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

- 품목 : 직불금의 81% 쌀농가 지급 →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  
- 지급방식 : 면적비례 지급으로 대농 유리 →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계  
-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 → 공익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

### □ 시장개방화 대응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작물 경쟁력 확보 시급

- 밭작물 생산기반 취약 :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, 영세한 규모, 고령화

- 기계화율('18년) : (논농업) 98.4%, (밭농업) 60.2%

\* 작업별 기계화율 : 경운·정지(99.8%), 파종·정식(9.5), 비닐피복(71.1), 수확(26.8)

- 취약한 생산기반과 최근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으로 가격변동이 심함

- 국내산·수입산 가격차 : 대두 4~2배, 옥수수 4~2배, 밀 4~1.6배

- 주요 식량(사료용 제외) 자급률 : 쌀보리 32.6%, 밀 1.2%, 옥수수 3.3%, 콩 25.4%

### □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필요

- 1인가구 증가 및 학교 급식 등으로 인해 국내 과일 소비 트렌드의 변화 가시화

- 섭취 편리성이 높은 씨없는 포도, 중소과(미니), 맵질때 먹는 배 등 간편한 과일을 찾는 소비자 증가

- 국내육성 제철과일 출하를 위한 품종보급 확대(경기도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)

- 친환경 인증을 위한 기술도입으로 공공급식용 안전과수 생산단지 조성

- 다자간 FTA체결, 기후변화, 에너지 문제, 농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
  - 시설규모화, 기계화, 자동화 및 정밀농업 요구
- 온습도, 일사량, 탄산가스 등 생육환경 정보 수집 및 데이터영농 필요
  - 병해충 진단, 시설 개보수, 재배시스템 개선, 품목결정, 정식시기 결정 등에 적용
-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사양관리 기술보급사업 전개
  - 기후변화대응·가축생체·유전정보 활용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체계 구축
  -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금류 폐사 19.4%감소, 착유량 4.9%향상, 번식률 8.4%향상
- 축산·미생물 과학영농서비스 강화로 안전농축산물 생산체계 구축
  - 송아지 초유급여로 폐사 70.4%감소, 맞춤형 액비 활용으로 화학비료 70%절감
  -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축사냄새 51.4%, 가축질병 42.3%, 농약·비료 52.3%감소

## □ 외래·돌발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찰 및 적기 방제

-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, 온난화, 이상기상 현상 등으로 외래·돌발 병해충 급증
  - 1900년 이래 87종(병 40, 해충 47) 유입, 이 중 32종(36.8%)이 2000년 이후 발생
-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약충기·성충기 예찰 및 산림부서와 협업방제
  -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갈색날개매미충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발생지역 중점방제
-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(1시군→5시군)
  - 사전 약제방제(3회), 중앙·지방 합동예찰(4회), 매몰지 관리(104개소)
- PLS 및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교육 강화
  - 등록된 농약 사용 및 부적합이 높은 작물, 농약 위주 컨설팅 추진

## □ 신소득분야 곤충산업 육성
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가 '곤충이 지구촌 기근과 영양부족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'으로 제시하여 곤충식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
  - 전세계적으로 1,900종의 곤충을 약 20억명이 식용으로 이용
- 식용 및 학습애완곤충 등의 홍보강화로 곤충생산농가가 크게 늘었으나 수요는 정체되어 신규농가 경영유지에 어려움
  - 유통개선, 홍보강화, 경영비절감 기술 등으로 곤충산업 발전 필요

## □ 양봉산업 및 양잠산업의 중요성 증가

- 소자본 투자, 귀농·귀촌의 증가 등으로 신규 양봉농가가 늘어나 농업·농촌 발전에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함
  - \*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(2019.08.27.), 시행(2020.08.28.)
- 누에가루, 동충하초, 오디, 의료용 소재 등 양잠산물의 다양화 및 가능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양잠산업 발전 기여

## □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이 주요 농정과제로 부상

- (정부정책)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중심의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
  - ※ 국정과제 “고르게 발전하는 지역”
    - 국정과제 81(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)
    - 국정과제 83(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)
  - ※ 2018년 정부부처 업무보고(농림축산식품부)
    - “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.”
    - 융복합산업 육성 :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 등 창업보육 지원 강화
- (사회적 이슈) 농업경영체의 고령화와 영세한 규모로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역량 미흡
  - 창업을 위한 역량 미흡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단(기술, 자본 등) 부족
    - ※ 6차산업화 애로사항 설문조사(2016, 경기연구원) : 시설및장비 구매부담(28%), 제품개발(13%)

## □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

- 농업은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높고 농촌 인력이 고령화, 여성화되고 있어 농업인은 작업부담과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
  - \* 농업분야 재해 발생현황은 1천명당 7.3명으로 전체산업(4.84명)의 1.5배(고용노동부, 2017)
- 농촌은 빠른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, 노년기 · 경제적 어려움이 소외·우울, 빈공 등을 심화
  - \* 농촌 고령화율(통계청, 2017) : 전국 농촌 고령화율은 42.5%로 전체 고령자 비율 14.2%의 약 3배
  - \* 농촌 65세 이상의 8.9%는 자살생각 경험, 1.1%는 실제 자살 시도(간강, 빈곤, 외로움이 주요인)

## □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속에서 농업경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기계화, 자동화, 정밀농업 등 기술로 노동력 보완 필요성 증대

- 농가인구 : '00) 514천명 → '17) 317천명(38.3% 감소)
- 농업경영비 : '00) 10.7백만원 → '17) 25.9백만원(142.1% 증가)
  - ※ 통계청 농업통계(경기도 기준)

## □ 농업·농촌의 다원적기능 활용한 사회적농업에 대한 공감 확산

- 체험, 치유, 팜파티, 도시농업 등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가치증대
  - \* 농가소득('16) 40,978 천원 → ('17) 42,563천원(농업소득 17.7% 농외소득 55.7)
- 도시농업 전문가, 원예치료사 등 농업관련 사회적 복지 일자리 창출

### 3. 농촌지도사업 기술보급 추진방향

#### □ 국내육성 품종벼 확대재배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

- 외래품종 벼 대체 국내육성 품종 확대재배
  - 우량종자 생산 보급 경기명품쌀 생산기반 구축,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(46%)
- 경기도 육성 품종 브랜드화 및 생산단지 조성
  - 소비확대를 위한 품종특성에 맞는 재배매뉴얼 준수, 생산기반 구축
- 쌀 생산비용 절감 및 가공품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
  - 벼 밀묘소식재배, 농업용 드론 등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및 기능성 쌀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

#### □ 밭농업 생력화 기술 및 지역특화 밭작물 경쟁력 강화

- 밭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생력화 기술 보급
  -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 : ('18) 60.2% → ('20) 70 → ('23) 75
- 경쟁력 높은 지역주산 밭작물 명품화 및 잡곡 생산을 통한 자급률 향상
  - 재배기술 고도화 및 가공·유통 연계 밭작물 부가가치 향상

#### □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생산단지 조성

- 지역활력화 및 친환경 안정생산 등 생산성 향상 기술 확대 추진
- 한국형 스마트팜 시설원예 적용기술 보급 및 ICT활용 기반구축
- 이상기후 대응 및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확대
- 딸기, 마늘, 화훼 등 국내육성 품종 보급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보급
-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시범 등 수출기반조성 및 농가 경쟁력 강화

#### □ 소비자 맞춤형 최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

- 소비자 선호 및 국내품종 과일 생산단지 확대 조성
  - 공공급식용 과수 및 국내육성품종 수출 지원 등 재배기반 형성
- 기후변화 대응 및 과원관리 생력화를 통한 과일품질향상 관리 기술 강화
  - 환경제어 기술 및 기상재해 예방 기술 도입을 통한 과일 안전 생산
  - 과수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경기과일 홍보 연계

#### □ 고품질 특용작물 경쟁력제고 기술보급

- 버섯 신품종 확대 보급 및 환경개선을 통한 버섯 상품성 향상
  - 소비자 지향 고품질, 장기 유통형 품종 육성을 통한 국내 소비 및 점유율 증가
- 고품질 경기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

## □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축산·미생물 과학영농서비스 강화

-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기술보급사업 전개
  - 기후변화대응 및 생육정보·유전정보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
-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위한 축산 과학영농서비스 제공
  -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유은행 확대 : ('19) 7 → ('20) 8개소
- 양질미생물 생산·공급 등 친환경농축산업 기반조성사업 전개
  - 화학농자재(항생제·농약·비료) 감소 및 친환경농축산업 생산기반 조성

## □ 신성장 소득분야 곤충산업

- 곤충 소비모델 개발 및 곤충산업 홍보 활동 강화
  - 2020 경기곤충페스티벌 개최 : '20. 5. 8 ~ 10 / 농업기술원
- 곤충생산농가+곤충가공·유통업체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
  - 경기도우수곤충통합브랜드 개발 및 현장 적용

## □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병해충 방제

- 농산물안전성 분석 기능확대 ('19) 7개소 → ('20) 10 → ('25) 16
- 바이오차, 퀄레이트제 등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 보급
-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적기예찰 및 예방·사전방제 강화
- 신종·돌발병해충 발생증가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방제
-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기 예찰 방제 추진 : 발병사군(4회), 미발병사군(2회)
-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컨설팅 강화

## □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력 육성

-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과 지역리더 활동에 앞장서는 농촌지도자 육성
- 농업농촌문화를 지키고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
- 4-H회를 농촌후계인력육성과 청년농업인 1,000명 확보
- 전문기술보급과 청년농업인의 멘토 전문경영인 육성, 젊은농부 안정적 정착 지원
- 품목별 농업인의 자율적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향상

## □ 행복한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 교육 추진

- 농촌융복합 산업화(6차) 교육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
- 작목별 맞춤형 재배기술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인 양성
-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신규농업인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
- 농업기계운전 및 자가 정비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
- 현장중심의 실습교육 위주로 적용 가능한 실용교육 강화
- 농촌진흥공무원의 분야별 현장기술지도 역량 강화로 영농현장 애로해결

**□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식문화 보급·소규모 창업 활성화**

-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가공창업 및 보육 지원
-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가공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
- 전통식문화 계승과 우리농산물 이용 바른 식생활 확산

**□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확산 및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**

-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
- 농작업 편리성 향상 장비 보급 및 유해·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조치
-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소일거리 지원으로 사회·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

**□ 경영수준별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 및 조직화 지원**

- 컨설팅과 코칭을 통한 경영전략으로 강소농을 양성하여 자율모임체 육성
- 창업농, 강소농 대상 기술·경영 결합 컨설팅에 의한 경영개선으로 소득 안정 도모
- 틈새시장 고객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

**□ 도시농업·농촌체험·치유농장을 통한 사회적 농업 구현**

- 도시농부학교운영,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등 소비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
-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로 도농교류 활성화
- 교육, 돌봄 등의 사회적 농업 적용한 치유농장 육성

**□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**

- 농업인 가공제품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, 유통판로 개척 활동 지원
- 농업인 전자상거래 통합 택배 물류 활용 및 판매촉진 지원
-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·개선 및 판로개척 활동 지원
- 경기도 신품종 쌀(참드림, 맛드림 등) 소비촉진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

## 4.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목표

###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



#### 중점 추진 방향

- 농촌지도사업 기술기반 조성 및 핵심 전문농업인력 육성
-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 확산
-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및 도농 상생 협력

#### 주요 추진 과제

- ◊ 농촌진흥기관 활성화 추진
- ◊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
- ◊ 농업·농촌의 미래 로드맵을 설계하는 인력육성
- ◊ 행복한 농업·농촌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
- ◊ 안전한 경기 명품쌀 생산 및 생산비절감 기술 보급
- ◊ 발농업 생력화 기술 및 지역특화 밭작물 경쟁력 강화
- ◊ 안전한 농산물 생산 종합검정실 운영 및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
- ◊ 시설원예 안정 생산기술 보급
- ◊ 소비자 맞춤형 과일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
- ◊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 신기술 보급
- ◊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·방제 추진
- ◊ 축산·곤충 산업 활성화 추진
- ◊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- ◊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및 농촌노인 삶의질 향상
- ◊ 농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
- ◊ 도시농업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구현
- ◊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